

[일반공급 자격 확인 제출 서류 안내]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문예약 안내

예약일정	방문일정	예약방법	제출장소
06.02(목)~	06.03(금)~06.11(토) 10:00 ~17:00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홈페이지 사전방문예약 시스템 ※ 일자/시간별 선착순 예약 마감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건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58-6)

■ 자격 확인 제출 서류(공통)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및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발급분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청약 불가 기록대조일은 본인의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추가 (해당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 된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및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전체 포함
대리 신청 시 추 가	-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본인	인감증명서	계약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도장 또는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도 제3자로 간주)			

■ 자격 확인 제출 서류(공통)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본인	청약 가점표	건본주택 비치
추가 (해당자)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등분에 등재된 경우)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부양가족에서 제외. 기록대조일은 본인의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당첨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5. 13.] 이후 발급분에 한 합니다.
※ 본 안내문은 제작 과정상 오탈자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00-00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확인 제출 서류 안내]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문예약 안내

예약일정	방문일정	예약방법	제출장소
06.02(목)~	06.03(금)~06.11(토) 10:00 ~17:00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홈페이지 사전방문예약 시스템 ※ 일자/시간별 선착순 예약 마감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건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58-6)

■ 자격 확인 제출 서류(공통)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발급분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및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청약 불가 기록대조일은 본인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추가 (해당자)	본인	복무 확인서	10년(또는 25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 된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및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전체 포함
	본인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 신청 시 추가	-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본인	인감증명서	계약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도장 또는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도 제3자로 간주)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5. 13.] 이후 발급분에 한 합니다.
※ 본 안내문은 제작 과정상 오타자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00-00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확인 제출 서류 안내]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문예약 안내

예약일정	방문일정	예약방법	제출장소
06.02(목)~	06.03(금)~06.11(토) 10:00 ~17:00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홈페이지 사전방문예약 시스템 ※ 일자/시간별 선착순 예약 마감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58-6)

■ 자격 확인 제출 서류(공통)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발급분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및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본인 및 세대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청약 불가 기록대조일은 본인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로 설정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소득증빙서류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추가 (해당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및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본인 또는 배우자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의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견본주택 비치 / 임신의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견본주택 비치 / 본인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대리 신청 시 추가	본인	부동산 소유현황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모두 제출(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도 제3자로 간주)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5. 13.] 이후 발급분에 한 합니다.
※ 본 안내문은 제작 과정상 오타자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00-00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③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 급되지 않는 자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 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서(직인 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별도 서식)	① 견본주택 비치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1.02.28-up date)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 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5. 13.] 이후 발급분에 한 합니다.
※ 본 안내문은 제작 과정상 오타자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00-00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보유 현황 증빙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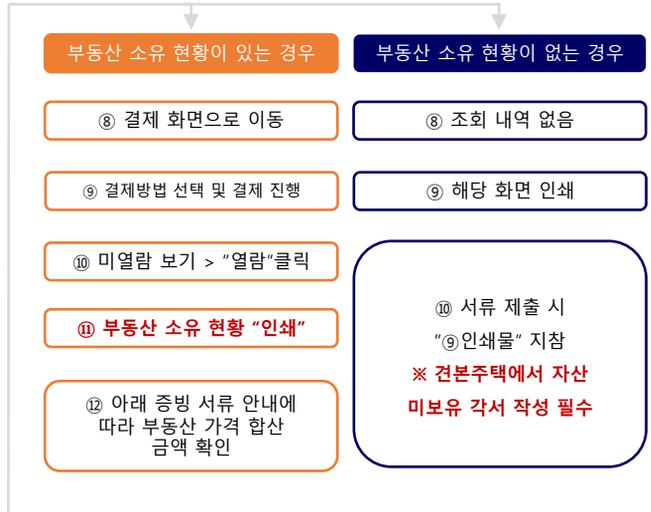
■ 소득초과자 자산 보유 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격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격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산 보유(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안내

- 발급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의 인증서 필요)
- 발급 절차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접속
- 등기 열람 / 발급 ▶ "부동산 소유 현황" 클릭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부동산 소유 현황 서비스 이용 안내 동의 후 "확인"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 "검색"클릭
- 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 ▶ "확인"클릭
- 부동산 소유 현황을 신청 하시겠습니까? 팝업에서 "확인"클릭



■ 자산 보유(부동산 소유) 시 증빙 서류 안내

구분	건축물 종류	발급기관	발급방법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 접속 > 공동주택공시가격 > 주소 입력 > 열람하기 > 출력
	주택 단독주택		1) 사이트 접속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주소 입력 > 열람하기 > 출력 2) 사이트 접속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시·군·구청 홈페이지 이동 > 주소 입력 > 검색 > 출력
주택 외	서울 소재지	서울시 이택스 (http://etax.seoul.go.kr)	사이트 접속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 > 주소 입력 > 조회 > 상세보기 > 출력
	그 외 지역 소재지	위택스 (http://www.wetax.go.kr)	사이트 접속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주소 입력 > 검색 > 출력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포함)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 접속 > 개별공시지가(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조회 > 시·군·구청 홈페이지 이동 > 주소 입력 > 조회 > 출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5. 13.] 이후 발급분에 한 합니다.
※ 본 안내문은 제작 과정상 오탈자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00-004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인 제출 서류 안내]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문예약 안내

예약일정	방문일정	예약방법	제출장소
06.02(목)~	06.03(금)~06.11(토) 10:00 ~17:00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홈페이지 사전방문예약 시스템 ※ 일자/시간별 선착순 예약 마감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건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58-6)

■ 자격 확인 제출 서류(공통)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발급분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및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청약 불가 기록대조일은 본인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로 설정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소득세 납부 사실 입증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발급처:해당직장,세무서)	
	본인 및 세대원	소득증빙서류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의 소득 입증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추가 (해당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 된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및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부양 직계비속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의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비사업자 확인각서	건본주택 비치 / 본인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모두 제출(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대리 신청 시 추가	-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본인	인감증명서	계약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도장 또는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도 제3자로 간주)**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5. 13.] 이후 발급분에 한 합니다.
※ 본 안내문은 제작 과정상 오타자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00-0041**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구분	해당자적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해당 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③ 해당 직장/ 세무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해당자적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③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 지 않는 자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서(직인 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별도 서식)	① 견본주택 비치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21.02.28-up date)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1,721,716원~ 12,447,721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173,726원~ 13,899,731원~
		160%이하,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5. 13.] 이후 발급분에 한 합니다.
 ※ 본 안내문은 제작 과정상 오탈자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00-004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보유 현황 증빙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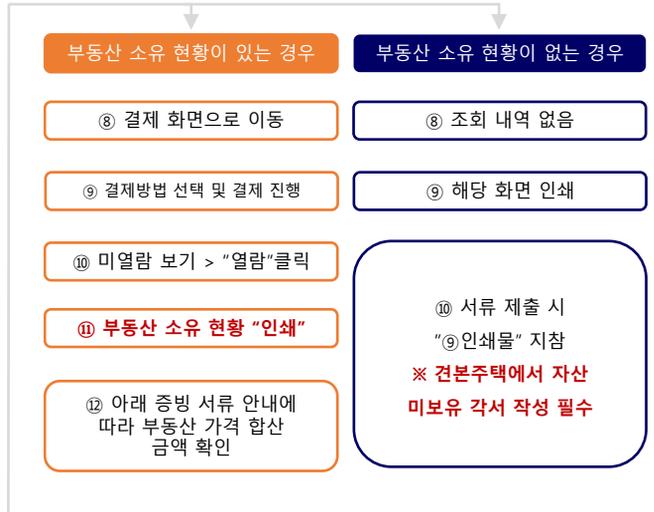
■ 소득초과자 자산 보유 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산 보유(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안내

- 발급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의 인증서 필요)
- 발급 절차

-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접속
- ② 등기 열람 / 발급 ▶ "부동산 소유 현황" 클릭
- 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④ 부동산 소유 현황 서비스 이용 안내 동의 후 "확인"클릭
- 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 "검색"클릭
- ⑥ 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 ▶ "확인"클릭
- ⑦ 부동산 소유 현황을 신청 하시겠습니까? 팝업에서 "확인"클릭



■ 자산 보유(부동산 소유) 시 증빙 서류 안내

구분	건축물 종류	발급기관	발급방법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 접속 > 공동주택공시가격 > 주소 입력 > 열람하기 > 출력
	주택 단독주택	서울시 이택스 (http://etax.seoul.go.kr)	1) 사이트 접속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주소 입력 > 열람하기 > 출력 2) 사이트 접속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시·군·구청 홈페이지 이동 > 주소 입력 > 검색 > 출력
주택 외	서울 소재지	서울시 이택스 (http://etax.seoul.go.kr)	사이트 접속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 > 주소 입력 > 조회 > 상세보기 > 출력
	그 외 지역 소재지	위택스 (http://www.wetax.go.kr)	사이트 접속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주소 입력 > 검색 > 출력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포함)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 접속 > 개별공시지가(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조회 > 시·군·구청 홈페이지 이동 > 주소 입력 > 조회 > 출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5. 13.] 이후 발급분에 한 합니다.
※ 본 안내문은 제작 과정상 오탈자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00-0041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확인 제출 서류 안내]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문예약 안내

예약일정	방문일정	예약방법	제출장소
06.02(목)~	06.03(금)~06.11(토) 10:00 ~17:00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홈페이지 사전방문예약 시스템 ※ 일자/시간별 선착순 예약 마감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건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58-6)

■ 자격 확인 제출 서류(공통)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발급분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및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청약 불가 기록대조일은 본인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로 설정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다자녀 배점 기준표	건본주택 비치
추가 (해당자)	본인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 가족(지정된 지 5년 경과된 자) 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 된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및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경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 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부양 직계비속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의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건본주택 비치 / 임신의 경우
대리 신청 시 추가	-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본인	인감증명서	계약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도장 또는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도 제3자로 간주)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5. 13.] 이후 발급분에 한 합니다.
※ 본 안내문은 제작 과정상 오탈자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00-004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확인 제출 서류 안내]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문예약 안내

예약일정	방문일정	예약방법	제출장소
06.02(목)~	06.03(금)~06.11(토) 10:00 ~17:00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홈페이지 사전방문예약 시스템 ※ 일자/시간별 선착순 예약 마감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건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58-6)

■ 자격 확인 제출 서류(공통)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발급분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및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청약 불가 기록대조일은 본인의 생년월일부터 현재 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청약 가점점수 산정표	건본주택 비치	
피부양 직계존속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신청 불가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현재 까지로 설정	
추가 (해당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 된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및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 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당첨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 까지,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대리 신청 시 추가	-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본인	인감증명서	계약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도 제3자로 간주)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5. 13.] 이후 발급분에 한 합니다.
※ 본 안내문은 제작 과정상 오탈자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00-0041

[계약 시 제출 서류 안내]

■ 예약 일정 및 계약 일정 안내

예약일정	계약일정	예약방법	제출장소
06.12(일)~	06.13(월)~06.16(목) 10:00 ~17:00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홈페이지 사전방문예약 시스템 ※ 일자/시간별 선착순 예약 마감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건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58-6)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본인 계약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계약금 입금증	건본주택에서는 현금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분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대리인 계약시 불가) ※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수입인지(인지세)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추가 (해당자)	-	추가 개별 통지서류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및 제출 미비서류 등
대리 신청 시 추가	-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본인	인감증명서	계약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도장 또는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도 제3자로 간주)			